청소(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업)]

청소는 웰빙, 환경 등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점점 청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업)』 콘텐츠에서는 청소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청소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소업자가 해야 하는 법적 의무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업) 1
1. 청소업 개관 4
1.1. 청소업 개요 4
1.1.1. 청소 및 청소업 4
2. 건물 청소 5
2.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5
2.1.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5
2.1.2.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7
2.1.3.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9
2.1.4.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10
2.2.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 11
2.2.1. 위생 관련 의무 11
2.2.2. 시설 관련 의무 14
3. 저수조 청소 16
3.1. 저수조청소업 개념 16
3.1.1. 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16
3.2. 저수조청소업 신고 등 17
3.2.1. 저수조청소업 신고 17
3.2.2.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19
3.2.3. 저수조청소업 운영 21
3.2.4.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25
4. 어장 청소 26
4.1. 어장정화·정비업 26
4.1.1. 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26
4.1.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 29
4.1.3.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31
5. 선박 청소 34
5.1. 항만용역업 34
5.1.1. 항만용역업 등록 34
5.2. 유창청소업 36
5.2.1. 유창청소업 등록 등 36
5.2.2. 유창청소업자의 의무 40
6. 항공기 청소 43
6.1. 지상조업사업 43
6.1.1. 지상조업사업 등록 43

1. 청소업 개관

1.1. 청소업 개요

1.1.1. 청소 및 청소업

청소 및 청소업의 종류

청소대상과 청소업

▪ 개별 법령에서는 청소를 해야 할 대상과 청소 방법을 규정하고, 이러한 청소를 업(業)으로 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상 청소업 한 눈에 보기

구분		내용	바로가기
건물 청소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2-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저수조 청소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3-1 저수조청소업 개념
어장 청소	어장정화·정비업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4-1 어장정화·정비업
선박 청소	항만용역업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5-1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함)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2 유창청소업
항공기 청소	지상조업사업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6-1 지상조업사업

※ 이 콘텐츠에서는 청소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물위생관리업, 저수조청소업, 어장정화·정비업,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지상조업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 건물 청소

2.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2.1.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개념

"건물위생관리업"이란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출서류	내용
영업신고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철도사업자에는 도시철사업자를 포함

Q. 「공중위생관리법」 상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입주청소/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정규모"란 '공중위생시설' 개념이 삭제되어 '일정규모' 판단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25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16쪽 참조]

위반 시 재제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 ※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물 청소-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위생 관련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제2호나목).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6호).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 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제5항, 제12조제4호, 제20조제1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가목).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 시		
1차 위반	영업장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150만원)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계속 영업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신고 수리 및 영업신고증의 교부 절차

영업신고증 교부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신고를 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의 재교부

▪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Q.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
> A.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2.1.2.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나목).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1).

벌칙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2.1.3.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대상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건물위생관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 신고

▪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영업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5항, 제12조,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다목).

<table>
<tr><th>위반 횟수</th><th>행정처분</th><th colspan="2">행정처분 미이행 시</th></tr>
<tr><td>1차 위반</td><td>경고</td><td colspan="2">-</td></tr>
<tr><td>2차 위반</td><td>영업정지
10일</td><td rowspan="2">영업장
폐쇄명령</td><td rowspan="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
<tr><td>3차 위반</td><td>영업정지
1개월</td></tr>
<tr><td>4차 이상 위반</td><td>영업장
폐쇄명령</td><td>-</td></tr>
<tr><td colspan="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td></tr>
</table>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속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 다만, 위 규정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3항).

벌칙

▪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2호).

2.1.4.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 절차

▪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상 예고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제5항,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2.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

2.2.1. 위생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기준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6호).

구분	내용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	√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종사자 교육	√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 안전사고 예방

▪ 비위생 처리장비(청소용구 등)의 구별보관, 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내용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35쪽).

위반 시 제재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7항).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제5항,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라목).

<table>
<tr><th>위반 횟수</th><th>행정처분</th><th colspan="2">행정처분 미이행시</th></tr>
<tr><td>1차 위반</td><td>경고</td><td colspan="2">-</td></tr>
<tr><td>2차 위반</td><td>영업정지 5일</td><td rowspan="2">영업장 폐쇄명령</td><td rowspan="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
<tr><td>3차 위반</td><td>영업정지 10일</td></tr>
<tr><td>4차 이상 위반</td><td>영업장 폐쇄명령</td><td>-</td></tr>
<tr><td colspan="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td></tr>
</table>

▪ 또한,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바목).

위생관리실태 보고

위생관리실태 보고 및 출입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물위생관리 영업소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소유자등에게 수거증을 교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 라목).

위반행위	행정처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이수

▪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구분		내용
원칙		사전 위생교육 이수
예외	유예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간주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분	내용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교육시간	매년 3시간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반 시 제재

▪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6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시설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설치 금지 카메라나 기계장치 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은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2호차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마목).

<table>
<tr><th>위반행위</th><th colspan="4">행정처분</th></tr>
<tr><td>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td><td colspan="4">150만원의 과태료 부과</td></tr>
<tr><td rowspan="2">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td><td>1차 위반</td><td>2차 위반</td><td>3차 위반</td><td>4차 이상 위반</td></tr>
<tr><td>영업정지 10일</td><td>영업정지 20일</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장 폐쇄명령</td></tr>
<tr><td colspan="5">※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td></tr>
</table>

3. 저수조 청소

3.1. 저수조청소업 개념

3.1.1. 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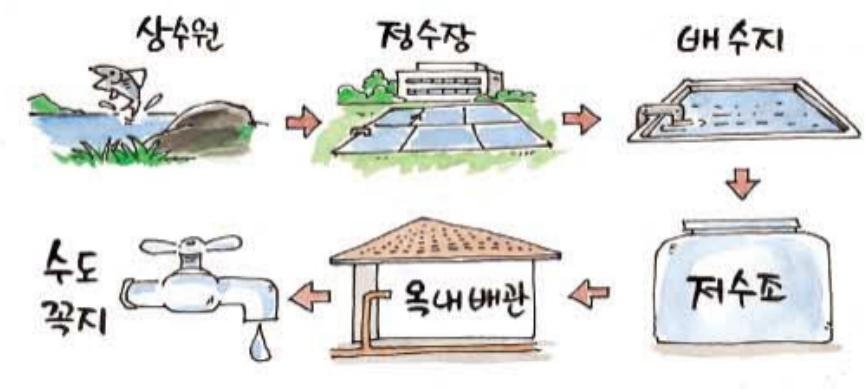
저수조 청소의 의의

"저수조"란

▪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합니다(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환경용어 참조).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의 필요성[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수조 청소 및 관리 요령』 (2002) 참조]

▪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상수원 보호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정수장·배수지·수도관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으며,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특히, 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유지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6호).

※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은 이 콘텐츠 <저수조 청소-저수조청소업 신고 등-저수조청소업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저수조 청소 방법

저수조 청소의 대행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 저수조청소업자가 대형건축물등의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2항).

3.2. 저수조청소업 신고 등

3.2.1. 저수조청소업 신고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청소업"이란

▪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1항).

저수조청소업 신고

신고기준

▪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및 별표 7의3).

구분	기준
인력	아래 1.과 2.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2명 이상
시설	√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만 해당)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신고절차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

-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맞으면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신고기준 미충족에 대한 제재

▪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2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7의4).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시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명령	3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사업장 폐쇄명령	-	
※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미신고 등에 대한 제재

▪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1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7의4).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시
1차 위반	사업장 폐쇄명령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벌칙

▪ 미신고 경영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도법」 제84조제1호)

> ※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34조제4항).

3.2.2.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 중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4항·제5항).

-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6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2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7의4).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 신고

휴업·폐업 신고

▪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저수조청소업 휴업, 폐업신고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3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7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6호).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
미신고 폐업 또는 휴업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저수조청소업 운영

저수조 청소 방법 및 관리 내용

저수조 청소 방법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본문).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참고 사항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제4호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이 발생한 경우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기준

▪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검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별표 6의2).

조사사항	점검기준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用水) 등이 없을 것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않을 것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을 것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않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 것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않을 것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

청소 등 대행 및 청소감독원의 현장배치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 저수조청소업자는 위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2항).

청소 시행 후 수질기준 점검

▪ 소유자등이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구분	기준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수질검사 및 결과공지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5항).

-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6항).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7항).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전단).

※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후단).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의무

교육의무

▪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제2호).

교육대상과 교육방법

▪ 저수조청소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함)은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의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함)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제5항).

▪ 위의 교육대상자가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3항·제5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위의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교육내용

▪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수도법」 및 위생 관련 법규
-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대한 사항
-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

▪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6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8항).

> ※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 및 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저수조청소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4.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수도법」 또는 「수도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7의4).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폐쇄명령 시 청문절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9조제4호).

4. 어장 청소

4.1. 어장정화·정비업

4.1.1. 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정화·정비업"이란

▪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2항).

어장청소

“어장청소”란

▪ “어장청소”란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 ※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7호).

어장청소 의무

▪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어장청소를 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면허의 종류에 따른 주기(3년부터 5년까지)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종전 면허와 같은 양식방법에 따라 같은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 ※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른 이행기간에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위의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 ※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장청소 절차

▪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어장청소의 위탁

▪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어장정화·정비의 대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5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어장인의 어장관리의무

▪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어장관리법」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2항).

▪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의무

등록된 선박 사용

▪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9조제2호).

4.1.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구분	등록기준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자본금	2억원
시설·장비	√ 인양장비: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위반 시 제재

▪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동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

>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22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절차

등록절차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 장비명세서 1부
- 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9조제3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8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반 시 제재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4.1.3.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선박원부

√ 선박검사증서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

▪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절차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3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영업 양도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합병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3호).

지위승계 결격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4항 및 제18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정화·정비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2호).

5. 선박 청소

5.1. 항만용역업

5.1.1. 항만용역업 등록

"항만용역업"이란

"항만용역업"이란

▪ “항만용역업”이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이하 “선박청소업”이라 함)
-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선박의 청소(유창청소 제외)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 유창(油艙)은 배 안에서 기름을 싣는 방으로서 유창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에 해당하므로, 유창청소를 제외한 선박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 유창청소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선박 청소-유창청소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6).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위반 시 제재

▪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제1항).

▪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제3호).

항만용역업 등록

등록절차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종사자의 현황,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사업개시 예정일을 기재)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항만용역업의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 청소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제2호),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1호).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제29조의3제2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용역업자”라 함)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

- 항만용역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항만용역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 법인인 항만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미등록 항만에서의 항만용역업 신고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항만용역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제8호).

-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고절차

▪ 영업개시 3일 전까지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자의 준수사항

▪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선박청소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용역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2호).

5.2. 유창청소업

5.2.1. 유창청소업 등록 등

"유창청소업"이란

"유창청소업"이란

▪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이란 선박의 유창(기름 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폐기물

√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 잔류물

▹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제28조)

√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의 화물잔류물(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 합성로프, 합성어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유창청소업 등록 기준

등록 기준

▪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본문).

▹ 기술요원: 기술요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함)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다만,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兼業)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

▹ 선박 및 장비 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항목		기준
선박	소유 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장비	가스검지기	1대 이상
	이동식 조명장치	폭발방지형으로 3대 이상
	승양기	양력 40kg 이상으로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에어펌프	1대 이상
	스팀 또는 에어터빈팬	2대 이상

※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유창청소업 등록

등록절차

▪ 유창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123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94조제5항제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23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유창청소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 및 별지 제28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창청소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제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 유창청소업자가 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1호, 제120조제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유창청소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 유창청소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대표자(「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 기술요원 보유현황
- 선박 및 항해구역
-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6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창청소업 승계신고

승계신고

▪ 유창청소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1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유창청소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2항).

▪ 유창청소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제123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43호서식).

-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승계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8호).

5.2.2. 유창청소업자의 의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 유창청소업자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의 교육·훈련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유사교육·훈련의 인정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호).

교육·훈련 기간

-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최초로 받는 교육·훈련과정: 3일 이내
  2. 위 1. 외의 교육·훈련과정: 2일 이내
-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이수증을 줍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 ※ 유창청소업의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대장 제출

처리대장의 제출

- 유창청소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제4항).
  -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사본
- 유창청소업자는 처리실적서와 처리대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및 보관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 유창청소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4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보관

▪ 유창청소업자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6. 항공기 청소

6.1. 지상조업사업

6.1.1. 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이란

▪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지상조업사업 등록

등록요건

▪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7).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액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장비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3항).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5. 임원 중에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

등록절차

▪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 해당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자본금

√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

√ 도급(하도급을 포함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지방항공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상조업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사업법」 제78조제2항제5호).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후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 자본금의 감소
-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 대표자 변경
-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 상호의 변경
- 사업 범위의 변경
- 도급(하도급 포함)에 관한 사항의 변경